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00
----------	-----

발의연월일 : '99. 9. 6.
발의자 : 김성만 의원외 4인

1. 주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 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다.

2. 배경

중구 지역에 대한 상권 회복은 그 동안 다각적인 행정지원에도 불구하고 IMF이후 경기침체로 털 중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상권 침체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원차원에서 근본원인을 찾고 중구 상권의 옛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제안이유

가. 과거 울산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유통, 금융, 공공의 중심지로 울산의 상권을 주도해 왔던 우리 구가 열악한 도시, 교통환경등으로 상권이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폐업하는 업체가 증가하는가 하면 매출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반면에 타지역으로는 남구에 롯데마그넷, 북구 까루프, 울주군의 메가마켓등 대형할인 매장이 개장되어 매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와 가장 인접한 남구지역으로 백화점 상권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난, 상권 침체등은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의회차원에서 상권 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상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4. 구성일시 : 제22회 임시회시

5. 위원회명 : 중구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6. 활동(조사)범위 : 중구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일련의 추진사항들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에 적극 반영.